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교육기관

(재) 한국능력개발원

수신자 기업 대표이사 (교육담당자)

(참조)

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 실시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;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2023.01.06.)으로 인해 24년도부터 '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'이 「일반 계속교육」과 「필수 계속교육」으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.

3. 위와 관련, 「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필수 계속교육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가. 필수교육 대상 : 기산일 기준 2024. 1. 7 이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
나. 교육시간 : 7시간(집체교육)
다. 교 육 비 : 80,000원
라. 집체교육 장소 :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9, (재)한국능력개발원
마. 신청방법 : 홈페이지 www.honamct.or.kr
바. 교육문의 : 062-529-3800

붙임 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안내 1부. 끝.

(재)한국능력개발원장

담당자 이소연 팀장 임영주 원장 서광준 이사장 김윤세

협조자

시 행 교육센터 2024 - 013 (2024. 01. 31.) / 접수 (2023. . .)

우 편 61401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9, 2호관 4층 / www.honamct.or.kr

전 화 건설기술인교육센터 대표 062-529-3800 / 전송 062-529-3801 / 공개

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 교육기관

건설사업관리 필수 계속교육 안내

1. 법적근거

○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기준

(별표6의2 건설기술인별 교육·훈련 내용(제25조제7항 관련)<신설>

2. 필수교육 대상 및 이수시기

○ 기산일(업무수행 차수 시작일)이 24.1.7 이후 계속교육 대상자

○ 24.1.7. 이후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 적용

○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.

3. 과정개요

○ 교육대상 : 건설사업관리 분야 필수 계속교육 건설기술인

○ 과 정 명 :

과정명	집체교육일	시간
CM 토목+조경+광업+안전 필수 계속 전문교육	2월 22일(목)	9:00~17:00
CM 건축+환경+도시·교통+안전 필수 계속 전문교육	3월 7일(목)	9:00~17:00
CM 기계+전기전자+건설지원+안전 필수 계속 전문교육	3월 28일(목)	9:00~17:00

○ 교육내용 : 시방서, 건설안전 사고사례

○ 수료기준 : 집체교육 (7시간), 교육종료후 온라인 시험 응시(60점 이상)

4. 교육비 : 80,000원

5. 기타

기산일이 2024.1.6. 이전이며 PQ 가점 교육	기산일이 2024.1.7 이후이며 PQ 가점 교육	기산일이 2024.1.7. 이후이며 필수 계속교육 대상
기존 규정 적용 - 스마트건설기술[BIM] - 스마트건설기술[드론+모듈러] - 건설프로젝트관리심화과정 - 건설안전관리 심화과정 - 글로벌PMC Practice	개정 규정 적용 [일반계속] 28h + [필수계속] 7h - CM 토목+조경+안전 고급과정[일반계속] - CM 건축+안전 고급과정[일반계속] - CM 기계+안전 고급과정[일반계속]	개정 규정 적용 - 필수 계속 전문교육 7h

○ 기산일 : 해당 차수 시작일

○ 업무수행일 :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(CEMS)으로부터 최종통보된 경력 반영

6. 문의처

○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9, 2호관 4층 (재)한국능력개발원 건설기술인교육센터

TEL. 062) 529-3800 / FAX. 062)529-3801 www.honamct.or.kr

건설기술진흥법 교육 · 훈련 개정사항 안내

☐ 건설기술진흥법 교육 · 훈련(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속교육)개정사항

구분		기존	개정		시행시기 (개정시기)
			교육시간	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*	
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	일반	(초·중급) 35시간 (고·특급) 70시간	(초·중급) 14시간 (고·특급) 49시간	• 스마트건설기술(5h) -BIM과정(3h)포함	24.1.7. 시행 (23.1.6. 개정)
	필수 (신설)	-	매년 7시간 (3년 21시간)	• 시방서(2h)+사고사례(2h) • 교육기관자율편성(3h)	

* 교육내용 편성 및 운영은 현재 고시개정 중

☐ 개정사항 적용 예시

사례 1 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인 계속교육 :
☞ 기존규정 유지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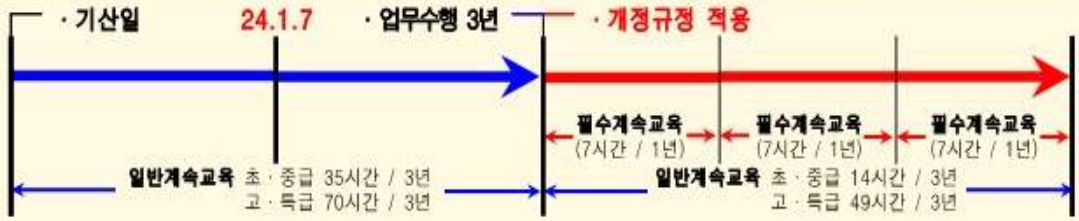

사례 2 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 이후 계속교육을 받은 경우 :
☞ 업무수행 3년되는 날까지 기존규정 유지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사례 3 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 이전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:
☞ 승급교육 이수일 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에 기존규정 적용 후,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부터 개정규정 적용

사례 4 업무수행 3년되는 날이 24.1.7. 이후이며, 24.1.7.이후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:
☞ 승급교육 이수일 후 새로 발생하는 계속교육에 개정규정 적용